

교육만족도관리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19. 06. 2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 교육만족도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만족도조사와 관련된 조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관리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운영
3.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환류체계(계획, 개선)등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.

②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와 연구원,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만족도관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을 두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3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

제5조(운영계획의 수립·보고) 센터장은 매 학년도 초에 센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기획조정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」을 준용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